

비교과 컨소시엄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클라우드형 비교과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표) 권역별 우수 비교과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 ① 권역별 대학연계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대학의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공유
- ② 클라우드형 비교과 플랫폼을 통해 참여 대학 학생들이 타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 가능
- ③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주거 지역 근처의 컨소시엄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계발과 진로 및 취업 준비의 기회 제공

제2장 운영

제3조(참여대학) 제2조의 목표와 운영 취지에 동참하는 경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루터대학교, 안양대학교, 호서대학교로 총 7개 대학으로 구성된다. 단, 컨소시엄 사업 운영에 있어 참여 대학 구성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제4조(운영부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루터미래교육원에서 담당하여 진행한다.

제5조(비교과의 구성) 총 7개 대학별 우수 비교과 프로그램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6조(수강대상) 비교과 컨소시엄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의 학부 재학생 및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비교과 컨소시엄 운영) 학생들이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비교과 컨소시엄 (개별) 프로그램 공유
2. 비교과 컨소시엄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비교과 컨소시엄 (개별) 프로그램 운영
4. 비교과 컨소시엄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및 공유

제8조(위원회) 비교과 프로그램의 지속적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평가 위원 체제를 도입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참여대학의 7개 대학 외부평가 위원 16명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9.5.27.개정)

- ① 비교과 컨소시엄 신규개설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② 비교과 (프로그램) 컨소시엄 실시에 관한 사항
- ③ 비교과 컨소시엄 운영 결과에 따른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
- ④ 비교과 컨소시엄 운영 결과 검토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⑤ 권역별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비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발효) 컨소시엄의 운영 규정은 컨소시엄 협약일로부터 발효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